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24 선고 2017나6902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24 선고 2017나69023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9. 14 선고 2016가단5148077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17. 12. 13.

판결 선고 2018. 1. 24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9. 14. 선고 2016가단5148077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

68,206,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5. 19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6. 5. 19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8행 중 각 "피고"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최석문

판사이원호

판사박승혜